

2022.07.07.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불이익 처우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2.06.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공인노무사 김재언

➤ 사실관계

-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대체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업무(발탁매니저 · 임시직책)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복귀시켰음
- 복귀이후 휴직전과 비교하여 경제적 불이익은 크지 않았음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전직 판단(근로자 승소)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1심 및 2심에서는 회사의 승소였으며, 다시 대법원에서 부당전직 판단(근로자 승소)을 받음

➤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쟁점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취지
- 조직변화속에서 다른 직무로 복귀시킨 경우 불이익의 판단기준

➤ 판단기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의미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은 물론 새로운 업무 부여로 근로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불이익도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호의 의미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휴직 전후 담당 업무를 비교하여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함

- 조직변화로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불이익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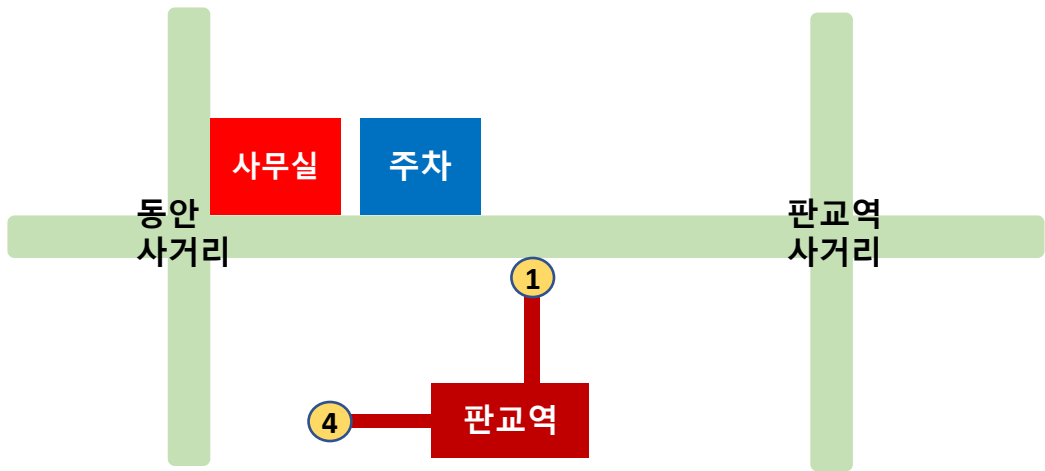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 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1심 · 2심과 대법원 판단의 차이

- 1심 · 2심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전 직책이 임시 직책이었던 점, 육아휴직 종료사유 발생으로 조기 복직을 하였던 점,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임시직책자의 실질이 임시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단순히 임금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내에서 권한 등도 고려한 점, 다른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 시사점

- 해당판결은 육아휴직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정 휴직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을 저해하는 요소도 불이익으로 보아 불이익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판결임
-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였을 때 입게 되는 불이익의 범위에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이익도 포함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조직변화로 인하여 휴직 전 직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직책자의 경우 복귀 시 직책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나타남
- 육아휴직자가 복직 시 휴직 전 직무가 사라져서 원직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명령보다는 직원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801호 (삼평동, 서건타워)

주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지하철 : 신분당선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거리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31-704-1223
팩스 031-8016-3498

양재 모 대표 공인노무사
cpla21@daum.net

김재 연 공인노무사
cplaeony@naver.com

황금 별 공인노무사
golds628@naver.com

안형 근 공인노무사
Cpla_ahg63@naver.com